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8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진영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(안 제1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9월 4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1, · 팩 스 : 031)3036-8953
 - 전자메일 : blue6017@korea.kr

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시장이 따로”를 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2항외”를 “법 제6조제2항 외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시장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75조”를 “시장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”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·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

한 후 운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,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21조 중 “「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시장이</u> 따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위원회의</u> <u>의결을 거쳐 위원장이</u>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(이하 “증진계획”이라 한다) 수립 시 <u>법 제6조제2항외</u>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7조(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6</u> <u>조제2항 외</u>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75조와 「경기도 사무위임 규칙」 제2조에 따라</u> 노선 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,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(是正)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9조(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)</p> <p>① <u>시장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7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제19조(교육) ① 저상버스, 특별교통수단, 이동지원센터 관련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교육이수 과정을 매년 수료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19조(교육)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·관리 및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2.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
4.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
5.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, 교육

제2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
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「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
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
지급할 수 있다.

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
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21조(수당 등) -----

-- 「오산시위원회 실비변상조
례」-----
-----.